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시 G 보

제17호(호외) 2024. 4. 30.(화)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4-1099호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(변경)(안) 공고·열람 ·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713, 행정2713)

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(변경)(안)

공고·열람

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·열람 하오니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4. 30.

광 양 시 장

1.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

도면 표시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 사유
		기정	변경			
-	황금동 산107번지 일원	보전녹지 지역	자연녹지 지역	2,083,845	100%	◦ 구봉산 권역 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2.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(안)

도면 표시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구봉산 자연경관지구	◦ 자연경관지구 일부 축소 - 6,597,203㎡ → 4,513,358㎡ 감) 2,083,845㎡	◦ 구봉산 권역 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 변경

※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관련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

3.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: 게재생략

4. 공람기간 및 장소

가. 기 간 : 2024. 4. 30. ~ 2024. 5. 14.(14일간)

나. 장 소 : 광양시청(도시과) 및 광양시청(관광과)

5. 의견제출 방법

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) 결정(변경)(안)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기타 내용은 광양시청 도시과(☎061-797-3426), 관광과(☎061-797-336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